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6 -제57호

제출연월일 2006. 10. 13 .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급권자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해주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액을 높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나. 융자금 한도액 상향 조정 (안 제5조제1항)

○ 현행 500만원 → 1천만원

다. 융자대상을 변경함 (안 제4조제1항제4호)

○ 중·고등학교의 학자금→ 대학교(전문대학포함)의 학자금

라.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및 책임 명문화(안 제10조의 2 및 제10조의 3)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2006. 6 . 23 ~ 7. 13)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3)규제심사 :해당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1조중 “저소득주민”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한다.

제2조중 “저소득주민”이라” 를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3조 본문중 “기금”을 “단기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본문외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천시 출연금
2. 회수한 융자 상환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4조제1항제4호중 “중·고등학교”를 “대학교(전문대학포함)”로 하고, 같은항제5호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5백만원” 을 “1천만원” 으로 한다.

제8조중 “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사천시기금관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조중 “저소득주민”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회 - 총무위 부록)

제10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

제10조의3(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명 :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말한다.	제2조(---)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융자금의 회수액 3. 기금운용으로 수익금 <신설>	제3조(---) 단기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1. 사천시 출연금 2. 회수한 융자 상환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4조(융자대상) ①(생략) 1 ~ 3 (생략) 4.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 5.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금 ②(생략)	제4조(--------)① (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대학교(전문대학포함)----- 5.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109회 - 총무위 부록)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융자금액 등) ①기금의 융자액은 1세대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③ (생략)	제5조(---------) ①---------- ----1천만원----------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심사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에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①---------- ---------- ---------- 사천시기금관리심사위원회--------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
제10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상환금,기금이자로 한다 ②(생략)	제10조(-------) ①----------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한다 ②(현행과 같음)
<신설>	제10조의 2(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
<신설>	제10조의3(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4·3·16]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94·3·16]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제109회 - 총무위 부록)

【지방재정법】

제9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9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임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제9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 또는 분임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수급자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소득(이하 "실제소득"이라 한다)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 미만일 것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다.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5. 기타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등의 부양능력에 대하여는 그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제109회 - 총무위 부록)

타 시군 생활안정자금 이율, 융자한도액, 상환기간 비교

□ 타시군 비교

시군명	조례명	이자율(%)	연체이자율(%)	융자한도액(천원)	상환기간	보증인
창원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2	6	20,000	2년거치36개월균분상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1인
마산시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3	15	20,000	〃	20,000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1인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3	6	10,000	〃	진주시 거주 세대주로서 재산세 5,000원이상인자 1인
진해시	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	3	수탁금융기관 의가계일반대출연체이자율	10,000	〃	진해시에 거주하고 10,000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자 1인
통영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3	10	20,000	〃	통영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으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5,000원
사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3	6	5,000	〃	5,000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자 1인
김해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3	10	10,000	〃	5,000원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1인
밀양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3	수탁금융기관 의가계일반대출연체이자율	10,000	〃	10,000원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1인
거제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여관리관리조례	3	수탁금융기관 의가계일반대출연체이자율	10,000	〃	금융기관이 정하는 연대보증인
양산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2	수탁금융기관 의가계일반대출연체이자율	10,000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의령군	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2	10	10,000	〃	5,000원이상의 재산세납부 2인
함안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2	수탁금융기관 의가계일반대출연체이자율	10,000	〃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정함

시군명	조례명	이자율(%)	연체이자율(%)	융자한도액(천원)	상환기간	보증인
창녕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2	15	10,000	2년거치36개월균분상환	5,000원이상의 재산세납부 **1인**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영조례	3	12	20,000	〃	**2인**이상의 연대보증,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적담보외에 물적담보 요구
남해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4	수탁금융기관의가계일반대출연체이자율	10,000	2년거치2년균분상환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산한 1만원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 자
하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3	15	10,000	3년거치3년균분상환	**새마을지도자, 이장중 1인**과 읍면장의 추천 5,000원이상의 재상세 납부 **1인**
산청군	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	1	수탁금융기간의가계일반대출연체이자율	15,000	2년거치3년균분상환	수탁금융기관의 자치내규
함양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2	수탁금융기간의가계일반대출연체이자율	20,000	〃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5,000원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 자 **2인**
거창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2	7	10,000	〃	재산세 5,000원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자 1인
합천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3	15	10,000	〃	재산세 5,000원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자 1인